

■ 최신 판례 ■

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1.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의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및 종전 결의 등 처분의 법률효과를 다투는 소송의 당사자지위까지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판시사항 설명

- ①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乙 주식회사를 선정하는 결의(이하 '제1결의')를 하였고,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乙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추인)하는 결의(이하 '제2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 ②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한 취소로 소급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고, 甲 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되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甲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사업시행자임을 전제로 개최한 조합총회에서 이루어진 제2결의는 소급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 ③ 한편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한 제1결의도 무효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④ 다만 그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종전에 결의 등 처분의 법률효과를 다투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지위까지 함께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해설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면, 그에 따라 조합의 기존 결의도 소급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의 당사자 지위와 같이 잔존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에서만 조합상 지위가 인정될 뿐입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때, 조합의 기존 법률관계가 무효가 되어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